

2024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-8번지(B6-2BL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4. 4. 24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에스디피플래닝 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0-8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1,066.50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871.74 m²	건폐율	80.17 %	층수 지하 : 2층 / 지상 : 9층
	주 용 도	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), 판매시설, 제1,2종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46.9 m	용적률	648.38 %	연면적 합계 90,405.22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계 획)분야	○ 벽면 주차차량의 추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필요 ○ 지상2층 판매시설의 용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건축 전과정에서 유의 요함 ○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부분과 조경부분이 계획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권장(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32번 참고) ○ 지상9층 근린생활시설 및 옥상 조경 공간에 실외기 공간 소음·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(권장)			
	(소 방)분야	○ 지하1층의 모든 거실과 복도를 포함해서 거실제연을 설치 바람 ○ 지하1층의 전기차 충전구역은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이동 바라며, 이동 불가시는 주차면수 3면마다 단위별 격리벽체(3면구획 방화벽)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바람			
	(공 통)분야				
	참고사항	○ 원안의결 사항으로 조건부 심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권장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